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규정

제정 2009.04.27.
개정 2014.08.04.
개정 2015.01.29.
개정 2018.05.0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법학전문대학원 전문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적용한다.

제3조(구분) 이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학금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등록금을 면제 또는 감면하는 장학금
2. 각종 교외장학단체(또는 개인)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3. 재단법인 서울대학교발전기금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4. 장애학생 도우미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5. 기타 장학금

제4조(자격) ①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경제적 환경이 어려운 자로서 학업성적이 일정 기준 이상인 자
 2. 수혜요건이 지정된 장학금은 그 요건을 갖춘 자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② 전항 제1호의 학업성적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그 직전 학기의 성적 평점평균이 2.2를 초과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이거나 같은 법 제2조제11호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1급-3급 장애인등록이 되어있는 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③ 신입생의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장학금 지급기준의 수립) ① 원장은 매 학기 학생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 지급기준을 수립한다.
② 제1항의 장학금 지급기준에는 학생의 경제적 환경 기타 장학금 지급의 필요성을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선정신청 공고) 원장은 학기개시 3개월 전(6월, 11월)까지 장학금 지급기준을 정하여 장학생 선정신청 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7조(선정신청)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장학생 선정신청서를 소정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 제3호의 사유로 장학생 선정이 취소된 자는 1년 이내에는 신청할 수 없다.

제8조(지도교수의 의견) 지도교수는 학생의 선정신청서에 의견을 붙여 원장에게 송부한다.

제9조(선정) 원장은 제 5 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장학생을 선정한다.

제10조(선정취소)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장학생 선정을 취소한다.

1. 휴학한 경우
2.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3. 장학생 선정신청서 또는 그 구비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4. 기타 부적격자로 인정된 경우

제11조(장학금의 등급) 제3조제1호의 장학금에는 경제적 환경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등급을 둔다.

등 급	지 급 수 준
A	등록금 전액
B	등록금 중 반액 초과 전액 미만
C	등록금 중 반액
D	등록금 중 반액 미만

<개정 2018.5.2.>

제12조(수혜기간) 장학금의 수혜는 1학기를 단위로 한다.

제13조(이중수혜 제한) 장학금은 원칙적으로 이중지급을 금한다. 단, 교내·외 장학금 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제14조(장학금 수혜보고) 이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장학금을 받은 자는 그 사실을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기록) 학생행정실에 장학생명부를 작성 비치하고 장학금 지급 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대여학자금) 가계가 어려운 자에게는 별도로 학자금을 대여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한다.

제17조(세부사항)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2009.4.2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8.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5.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